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
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
고서

1995. 2.
行政財務委員會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22일 구청
장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2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
차 위원회(1995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개정
(보사부 예규 제600호, '91. 9. 9) 및 모자
복지법 제정 시행(법률 제4121호, '89. 4. 1)과
관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
토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상
담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 도입하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
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녀(가정) 상담원의 명칭을 부녀(가정) 복
지상담원으로 변경
-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
토록 함.
- 임용자격기준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신설
 - 6급 상당 : 사회복지사 1급
 - 7급 상당 : 사회복지사 2급이상
 - 8급 상당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
격요건 강화
 - 6급 상당 : 사회복지행정 5년이상→12년이
상, 7급 상당 2년이상→5년이상
 - 7급 상당 : 사회복지행정 3년이상→ 7년이
상, 8급 상당 2년이상→3년이상

- 8급 상당 : 사회복지행정 (신설)→ 5년이상
-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40세로 조정
- 불합리한 자격기준 삭제
 - 부녀복지상담원 : 교사자격자
 - 가정복지상담원 :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
률학과 졸업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조대현)

부녀상담원 임용배치에 관한 규칙 개정 및 모
자복지법 제정시행과 관련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 소
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 도입과 아울
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준칙안에 맞추어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구청원안대로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
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302
번호	

제출년월일 : '95.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부녀상담원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 개정(보사부
예규 제600호, 91. 9. 9) 및 모자복지법 제정시행
(법률 제4121호, 89. 4. 1)과 관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
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상담원의 임
용자격 기준으로 도입하며, 아울러 일부 불합
리한 규정은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부녀(가정) 상담원의 명칭을 부녀(가정) 복
지상담원으로 변경
-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

8 (第31回－臨時會附錄)

④ 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함

○ 임용자격기준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신설

- 6급상당 : 사회복지사 1급
- 7급상당 : 사회복지사 2급이상
- 8급상당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 요건 강화

- 6급상당 : 사회복지행정 5년이상→12년이상, 7급상당 2년이상→5년이상
- 7급상당 : 사회복지행정 3년이상→ 7년이상, 8급상당 2년이상→3년이상
- 8급상당 : 사회복지행정(신설)→5년이상

○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

○ 불합리한 자격기준 삭제

- 부녀복지상담원 : 교사자격증
- 가정복지상담원 :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졸업자

②(부녀·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가정) 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부녀(가정) 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별표1”의 2호중 부녀상담원, 가정상담원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제4항 중 “다만, 부녀(가정) 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한다”를 “다만, 부녀(가정) 복지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40세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③ (생략) 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가정) 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55세 미만으로 한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가정) 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40세 미만으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⑤ (생략) 2. 부녀청소년·아동복지분야 <별표1>		1~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2. 부녀청소년·아동복지분야 <별표1>		
직명(위)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부녀상담원	6급상당(수석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상담처리 • 부녀상담원의 업무지도감독 	1. 4년제 대학졸업자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4년 이상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였거나 정규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 4. 부녀상담원(7급)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88. 8. 16)	
7급상당(일반상담원, 윤락여성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 가출부녀자의 선도보호 • 문제가정의 상담 	1. 4년제 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졸업자 2.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3. 부녀상담원(8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상담처리 •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12년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일반상담원(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7급상당(일반상담원, 윤락여성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자조사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상담지도 및 계몽 • 모자과정의 보호와 모자복지상담 •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 4년제 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졸업자 2.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3. 부녀상담원(8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제상담지도 및 계몽 •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7년이상인 여자 2.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3. 일반상담원(8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여자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부녀상담원	8급 상당(일반상담원, 윤락여성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 가출부녀자의 선도보호 • 문제가정의 상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였거나 정규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 2.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부녀상담원(9급상당)으로 1년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녀복지상담원	8급 상당(일반상담원, 윤락여성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자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상담 • 기타 선도보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한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9급 상당(일반상담원, 윤락여성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 가출부녀자의 선도보호 • 문제가정의 상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삭제)	(삭제)	(삭제)	
가정상담원	6급 상당(수석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상담업무의 연구개발 • 가정상담원의 업무지도 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의 사회사업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또는 법률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가정복지상담원	6급 상당(수석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상담업무총괄 •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4년이상 근무한자. • 사회복지과 1급자격증 소지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p>행정에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3. 가정상담원(7급)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12년이상인 자</p> <p>2. 일반상담원(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p>
7급 상 당(일 반 상 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 제 연구 조사 • 가정문 제 상담 		<p>1. 4년제 대학의 사회사업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또는 법률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3. 가정상담원(8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7급 상 당(일 반 상 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 제 연구 조사 • 가정문 제 상담 • 가족치료 		<p>1. 4년제 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7년이상인 자. <p>2. 일반상담원(8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p>
8급 상 당(일 반 상 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 제 연구 조사 • 가정문 제 상담 		<p>1. 4년제 대학의 사회사업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또는 법률학과 졸업한 자.</p> <p>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8급 상 당(일 반 상 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 제 연구조 반 사 • 가정문 제 상담 		<p>1. 전문대학이상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